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전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7월 12일 개정하여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당사자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계약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종의 경우 추가공사로 인한 분쟁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하였고, 당사자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가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하여 4대 보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전기업종에 있어서는 계약 변경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였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등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하였다.

※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본지 부록(107면 이하) 참조.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의 특수판매 분야 심결례, 판례, 질의답변 등을 참조하여 사업자, 소비자가 법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예시를 규정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06. 7. 19.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였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사업자 등이 법준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지침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토론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수판매 각 유형별로 그 개념,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지행위 및 각 유형별 별도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권고사항"을 통하여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휴업·폐업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하였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전문은 본 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cf.or.kr/data/read.php?board=6&page=1&serialnum=924> 참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06. 8. 1.부터 시행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지침 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동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본

인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 기록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즉시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용피해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전문은 본지 부록(109면 이하) 참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8. 30.(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위법성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29조의 규정내용이 간단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사건 담당자가 사건처리시 준

거할 기준이 없어 사건별로 과거 심결례 및 선진 경쟁당국의 유사사례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그간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는데, 동 지침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구성요소인 '강제성 판단기준', '매매와 위탁판매의 구분기준' 및 '위법성 심사기준' 등을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첫째,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존 심결례 및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8가지를 예시하였고, 둘째, 거래형식이 위탁판매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이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판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와 판매·

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위법성 심사기준은 '최저가격 유지행위'와 '최고가가격유지행위'의 경우에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고, '최고가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경쟁제한성이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전문은 본지 부록 (112면 이하) 참조.

M&A 신고 위반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기간을 초과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2006. 8. 3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부과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을 1천억원, 2조원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1천억원 미만 기업(Ⅰ단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현재보다 1/3 감경),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Ⅱ단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 2조원 이상 기업(Ⅲ단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현재보다 2배 인상)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2회 위반은 1.5배, 3회 위반은 2.5배 금액으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1건의 기업결합에 2

인 이상이 참여한 기업결합 신고위반의 경우, 실질은 한 건의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의 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과태료를 모든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 금액을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신고지연기간이 15일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 기준은 2006. 8. 31일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신고위반 사건부터 적용되며, 위반내용, 위반횟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함께 실효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 받는 과태료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회사들의 과태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업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용역업종 중 화물운송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함으로써 해당업종에서의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고자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8월 31일 제정하여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지시할 경우에는 위탁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는 것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구간별 물동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을 할 때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할 때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원사업자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차량을 도색하는 경우 도색비용 및 도색을 지우는 비용은 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 및 업무시간을 결정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휴무일 혹은 야간에 운송하게 될 때에는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동 계약서의 제정으로 해당 업종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고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본지 부록(115면 이하) 참조.



2006. 7·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6년 7·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6. 7월중 계열사 변동 현황〉

기업집단	2006. 7. 1.	편입				제 외							증감	2006. 8.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4개)	465	3	4	1	8	1	-	3	-	-	-	4	4	469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9개)	1,133	6	14	3	23	2	-	5	33	-	2	42	△19	1,114

〈2006. 7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 편입 : 23개사(회사설립 : 6, 지분취득 : 4, 기타 : 3)
- ◆ 제외 : 42개사(합병 : 2, 청산종결 : 5, 친족분리 : 33, 기타 : 2)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한 화	엔에이치엘개발(주)	해상화물 운송사업	지분취득	-	-	-
	(주)아산테크노밸리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회사설립	-	-	-
씨제이	드림씨티방송(주)	중계유선방송업	지분취득	-	-	-
	드림네트웍스(주)	정보통신공사업	기타	-	-	-
	(주)트라움하우징	부동산개발사업	회사설립	-	-	-
	(주)썬티브이	방송채널 사용사업	지분취득	-	-	-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씨제이	어코드 로지스틱스(주)	복합운송주선업	”	(주)해찬들씨에스	인력용역서비스업	청산종결
	씨앤아이 레저산업(주)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사설립			
한 철 공 국 도 사	한국철도개발(주)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지분취득	-	-	-
	(주)인터내셔널 패스앤커머스	전자화폐사업	”			
	브이캐시(주)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			
	케이티엑스 관광레저(주)	철도연계유통, 운송, 해운사업	”			
	(주)코레일 엔지니어링	철도차량 및 그 부품의 제작업	”			
	코레일서비스넷(주)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			
	한국철도통합 지원센터(주)	통합컨설팅(법률, 회계, 경영)사업	”			
	(주)케이아이비 보험중개	보험중개업	기타			
효 성	(주)인포바다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지분취득	-	-	-
현 대 백화점	(주)드림에어웨이	항공운수업	”	-	-	-
현 대 산 개 발	북항아이브리지(주)	북항대교 건설, 관리 및 운영	회사설립	-	-	-
	영창악기제조(주)	각종 악기의 제조 판매	지분취득			
	(주)커즈와일	각종 전자악기의 제조 판매	기타			
농 심	(주)메가코디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회사설립	-	-	-
삼 양	(주)삼양푸드앤 다이닝	식품유통 및 도·소매업	”	-	-	-
지에스	-	-	-	(주)코스모엔홀딩스	용역서비스사업	청산종결
동 부	-	-	-	(주)빌더스넷	건설업관련자재, 용역의 매매 및 중개	”

공정위 업무활동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하이트 맥 주	-	-	-	(주)푸리스음료	먹는샘물, 탄산음료, 청량음료 제조·판매	합병
동국제강	-	-	-	(주)탑솔티엔에스	정보통신관련 소프트 웨어 개발용역사업	청산종결
코오롱	-	-	-	코오롱 인터내셔널(주)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합병
중 앙 보	-	-	-	두앤비컨텐츠(주)	도서 및 학습지의 출판 및 판매	청산종결
				(주)덴츠이노백	광고대행업	친족분리
				(주)보광	스키장 운영업	"
				(주)보광훼미리마트	상품종합 도매업	"
				(주)씨앤마케팅 서비스	광고대행업	"
				(주)에이치아이이티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
				(주)엔아이지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
				(주)인터내셔널큐	보험대리 및 중개업	"
				(주)큐앤에이치	기타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
				(주)피디에스미디어	광고대행업	"
				(주)피와이언홀딩스	슈퍼마켓	"
				(주)한국문화진흥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
				(주)한국신문제작	신문 발행업	"
				(주)휘닉스 디지털테크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주)휘닉스 벤딩서비스	자동판매기 운영업	"
(주)휘닉스아프로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중 일 보	-	-	-	(주)휘닉스엔앰	비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친족분리
	-	-	-	(주)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	광고대행업	"
	-	-	-	(주)휘닉스파크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주)휘닉스피다이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	STS반도체통신(주)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	경인물류주식회사	일반창고업	"
	-	-	-	동부로지스(주)	창고업	"
	-	-	-	보광로지스(주)	일반창고업	"
	-	-	-	보광창업투자(주)	기타 투자기관	"
	-	-	-	서울물류(주)	일반창고업	"
	-	-	-	아이비즈닷컴(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	-	-	에이윈테크(주)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	위테크주식회사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	이씨브이에스넷(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중부로지스(주)	일반창고업	"
	-	-	-	중부물류(주)	냉장 및 냉동창고업	"
	-	-	-	하이로지스(주)	일반창고업	"
	-	-	-	휘닉스개발투자(주)	경영상담업	"
-	-	-	(주)화인로지텍	물류운송, 보관, 용역업	기타	
-	-	-	(주)휘닉스아일랜드	위탁관리용역업	"	



〈2006. 8월중 계열사 변동 현황〉

기업집단	2006. 8 1.	편입				제외							증감	2006. 9.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4개)	469	1	3	5	9	1	1	1	-	-	-	3	6	475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9개)	1,114	1	6	5	12	5	1	2	-	40	-	48	△36	1,078

〈2006. 8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 편입 : 12개사(회사설립 : 1, 지분취득 : 6, 기타 : 5)
- ◆ 제외 : 48개사(합병 : 5, 청산종결 : 2, 지정제외 : 40, 지분매각 : 1)

기업 집단	편입			제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에스케이	(주)아이에이치큐	영화제작, 수입, 배급, 상영업	지분취득	-	-	-
	(주)와이티엔미디어	프로그램 공급업	기타			
	(주)아이필름 코퍼레이션	영화제작 및 배급업	"			
	(주)엔트리브소프트	전자상거래 중개업	"			
롯데	대산엠엠에이(주)	MMA, TBA의 제조, 개발 국내판매 및 수출	회사설립	-	-	-
씨제이	영남방송(주)	종합유선방송 송출업	지분취득	(주)양산 케이블티브이방송	중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
	영남방송 영주총국(주)	케이블티브이, 프로그램 송수신업	기타			
	영남방송 예천총국(주)	티브이 중계 유선 방송사업	"			
	(주)에치티에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분취득			
대성	(주)토비즈 플러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	-	-
이랜드	(주)삼립개발	종합관광휴양업	"	-	-	-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한 국 타이어	에프더블유에스(주)	경영컨설팅 및 관련용역업	”	-	-	-
삼 성	-	-	-	(주)에치티에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지분매각
하이트 맥 주	-	-	-	(주)하이스코트 위스키	주류제조 및 판매업	청산종결
포스코	-	-	-	한국에너지투자(유)	발전업	합병
현 대 백화점	-	-	-	(주)에이치디 에스아이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임대판매업	청산종결
세 아	-	-	-	(주)영풍	동과이프 절단 및 가공 및 도매업	합병
태 광 산 업	-	-	-	전주반도 유선방송(주)	종합유선방송업	”
				(주)티브로드온 케이블방송	종합유선방송업	”